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

(대표발의: 김성희 의원)

의안 번호	21-6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5. .

발의자: 김성희, 강명숙, 김영미, 김진천,
서종수, 이민석, 이필레, 정혜경,
채우진, 최은하, 한일용

1. 제안이유

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국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등 공개 대상·방법을 규정함
(안 제2조 ~ 제3조)
- 나.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 설치·운영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심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
- 나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2

4. 조 례 안: 붙임

5. 예산조치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1. 5. 25. ~ 2021. 5. 30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국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
2. 국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·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
3. 국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공개대상 중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공개방법)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·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 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고센터 운영) ① 구청장은 예산·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,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,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(이하 “제안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시정요구·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예산절감 등의 심사)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

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심사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에서 시행한다.

제6조(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)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「지방재정법」

제48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, 재정지원을 받는 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(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- 제54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안명희 (☎ 3153-8512)